

정보통신 표준총회

지난 7월 3일 개최된 제1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는 새롭게 제정고시된 정보통신표준화지침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화 운영규정과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조직을 재구성하고, 정보통신 단체표준 15건과 한국정보통신표준(안) 7건을 심의 의결하였다.

본 고에서는 제1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음의 순서로 게재하고자 하오니 정보통신 표준화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정보통신 단체표준명 및 요약
2. 한국정보통신표준(안)
3.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조직
4. 정보통신표준화 운영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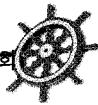
1. 정보통신 단체표준명 및 요약

1. ISDN 프레임 중계 서비스 표준 (TTA.IT-I.233.1)

- ISDN에 의하여 지원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
- SDN상에서 프레임 전송 방식을 권고함
- 이 서비스의 정의와 설명은 ISDN에서 그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망의 능력을 정의하는 기초를 형성함
- 프레임중계전달기능 서비스는 서비스데이터 단위의 양방향전달을 제공함
- 서비스데이터단위들은 부착된 레이블에 기초하여 적절한 계층2 PDU에 의하여 망을 통해 경로를 찾아 전달됨

2. ISDN 프레임 교환 서비스 표준 (TTA.IT-I.233.2)

- ISDN에 의하여 지원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
- ISDN상에서 프레임 전송방식을 권고함
- 이 서비스의 정의와 설명은 ISDN에서 그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망의 능력을 정의하는 기초를 형성함
- 프레임교환전달기능 서비스는 서비스데이터 단위의 양방향전달을 제공함
- 서비스데이터단위들은 부착된 레이블에 기초하여 적절한 계층2 PDU에 의하여 망을 통해 경로를 찾아 전달됨



3. MAP 신호방식(MSC/MSC간) 표준 (TTA.KO-06.008)

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내 MSC와 MSC간의 호환성 확보 및 시스템 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MSC와 MSC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.

1) 신호연결 제어부 및 문답처리기능 응용부 요구사항

- MAP 신호방식 (MSC/VLR-HCR-AC간) 표준(안)의 내용을 준용

2) 이동통신 응용부의 절차

- 일반적 사항
- 정보의 흐름
- 절차의 상세기술
- 오류 및 비정상 상황 처리

3) 정보요소

- 일반사항
- 동작의 정의
- 오류정의
- 파라메타 정의 및 부호화
- 타이머
- MAP 메시지와 TC-프리미티브와의 사상

4. MAP 신호방식(MSC/VLR-HLR-AC간) 표준

(TTAKo-06.0009)

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내 MSC와 HLR간의 호환성 확보 및 시스템 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MSC와 HLR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.

1) 신호연결제어부 및 문답처리기능 응용부 요구사항

- 신호연결제어부 요구사항
- 문답처리기능 응용부 요구사항

2) 이동통신 응용부의 절차

- 일반적 사항
- 정보의 흐름
- 절차의 상세기술
- 오류 및 비정상 상황 처리

3) 정보요소

- 일반사항
- 동작의 정의
- 오류정의
- 파라메터 정의 및 부호화
- 타이머
- MAP 메시지와 TC-프리미티브와의 사상

5. 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기지국의 최소성능 표준 (TTA.Ko-06.0010)

이 표준은 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인터페이스 표준인 TTA.KO-0062에 적합하게 동작하기 위한 CDMA 이동통신 기지국이 지녀야 할 최소성능 및 그의 측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아날로그 수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요구사항
- 수신기 성능
- 스패리어스 방사
- 송신기의 Cross Talk
- 복조요구사항
- 전도성 스패리어스 방사
- 수신신호 강도 표시기 (RSSI)

2) 아날로그 송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요구사항
- 변조 요구사항
- 수신기로부터 Cross Talk
- RF 출력전력 요구사항
- 방사에 대한 제한



3) 아날로그 환경 요구조건

- 온도와 전력공급기 전압
- 고습도

4) 표준 방사신호 측정절차

- 표준 방사 테스트 장소
- 전계 세기 측정
- 30m 시험범위
- 방사신호 측정절차
- 탐색안테나
- 주파수 범위
- 3m 시험범위

5) 아날로그 표준 시험 조건

- 표준장비
- 1차 전원공급에 대한 표준조건
- 표준 Duty Cycle
- 표준 시험 환경조건
- 표준 측정장비

6) CDMA 수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요구사항
- 복조요구사항
- 방사제한
- 이동국 억세스 프로브 인식
- 수신기 성능
- 수신신호 강도 표시기

7) CDMA 송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요구사항
- RF 출력전력 요구사항
- 변조요구사항
- 방사에 대한 제한

8) CDMA 환경 요구사항

- 온도와 전력 공급전압
- 고습도

9) CDMA 표준 시험 조건

- 표준장치

- 1차 전력공급기에 대한 표준조건

- 시험장비 설치
- 프레임 에러 측정율
- 표준 시험 환경조건
- 표준 측정장비
- 표준 Duty Cycle
- 신뢰성 한계

6. 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이동국의 최소성능 표준 (TTA. Ko-06. 0011)

이 표준에서는 무선인터페이스 잠정표준인 TTA.KO-0062에 적합하게 동작하기 위한 CDMA 이동통신 이동국이 지녀야 할 최소성능 및 그에 대한 측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아날로그 수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허용오차
- 수신기 성능
- 복사된 스포리어스 방사
- 복조요구사항
- 전도된 스포리어스 방사
- 수신신호 세기 지시자

2) 아날로그 송신기 최소규격

- 주파수 요건
- 변조 요구사항
- RF 출력전력에 대한 요구사항
- 방사 제한

3) 아날로그 환경 요구조건

- 온도와 전원전압
- 진동 안정도
- 고습도
- 충격안정도

4) 표준 복사신호 측정절차

- 5) 아날로그 표준 시험 조건
 - 표준장비
 - 1차 전원공급에 대한 표준조건
 - 표준시험장비
 - 표준 시험 환경조건
 - RF 커플러
 - 표준 Duty Cycle
- 6) 아날로그 프로토콜 확인 시험
- 7) 아날로그 옵션
- 8) CDMA 수신기 최소규격
 - 주파수 요구사항
 - 복조요구사항
 - 방사제한
 - 획득 요구사항
 - 수신기 성능
 - 감시
- 9) CDMA 송신기 최소규격
 - 주파수 요구사항
 - 변조 요구사항
 - 방사제한
 - 핸드오프
 - RF 출력전력 요구조건
- 10) CDMA 환경 요구사항
 - 온도 및 전원공급장치 전압
 - 진동에 대한 안정도
 - 최고습도
 - 충격 안정도
- 11) CDMA 표준 시험 조건
 - 표준장치
 - 1차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표준조건
 - 시스템 기능 구성
 - 표준 시험 환경조건
 - 표준 시험 장비
- 12) CDMA 프로토콜 타당성 시험
 - 13) CDMA 옵션
 - 14)가입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
7. 디지털 CDMA 셀룰라 시스템 음성부호화 기 표준 (TTA.KO-06.0012)

본 표준은 “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 인터페이스 잠정표준(TTA.KO-0062)”에서 사용되는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- 1) 일반사항
 - 2) 서비스옵션 수치
 - 3) 다중화 옵션
 - 다중화 옵션의 필수조건
 - 다중화 옵션1의 인터페이스
 - 서비스옵션 절차
 - 초기화와 접속
 - 서비스옵션 제어 명령
 - 4) 가변전송 음성부호화 알고리즘
 - 이동국 및 기지국에서의 입력 오디오 인터페이스
 - 포만트 합성 여파기의 형태 및 인코딩, 디코딩
 - 데이터 전송속도 결정
 - 페치예측 매개변수들의 결정
 - 여기 코드북 매개변수들의 결정
 - 데이터 패킹
 - 송신단 및 수신단에서 음성부호화기의 디코더 설계
 - 음성부호화기의 초기화
 - 출력 오디오 인터페이스
 - 인코딩, 디코딩 알고리즘 정리
 - 자연 허용치



8. 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인터페이스 표준 (TTA.Ko-06.0003)

본 표준은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일반적 조건 및 기술적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.

- 일반적 조건
 - CAI 정의
 - 관련 시스템 구성
 - 무선접속 방식
- 기술적 조건
 - 이동국의 조건
 - (송신기 및 수신기 요구조건, 보안 및 식별, 감시, 오류검출, 호처리, 신호형식)
 - 기지국의 조건
 - (송신기 및 수신기 요구조건, 보안 및 식별, 감시, 오류검출, 호처리, 신호형식)
- 표준 시험 방법
- 보칙

9. PSDN과 사설데이터 망간의 접속 프로토콜 표준 (TTA.IT-X.35)

이 표준은 패킷교환망(PSPDN)과 사설데이터 망(PSPvtDN)의 접속 프로토콜을 위해 PSPvtDN에 PSPDN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인터페이스와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. 이 표준은 PSPvtDN과 PSPDN간의 X.75 STE 규정에 좌우되지 않는 동등(peer-to-peer)한 사설망과 공중망의 접속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PSPDN이 시장수요에 직접 대응하도록 개발된 국제 권고안 X.35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.

이 표준은 PSPDN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 개정된 X.25 및 X.75 절

차를 근거로한 PSPDN과 PSPvtDN간의 인터워킹에 적용될 일반적인 절차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. X.25 및 X.75에 정의된 절차의 수정은 동등을 기본으로 한 SPDN과 PSPvtDN간 호 설정이 요구된다. PSPDN과 PSPvtDN간 인터워킹을 촉진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사설망 내의 요구사항과 작동의 예가 기술되어 있다.

이 표준은 PSPvtDN에서 PSPDN을 접속하거나 PSPDN에서 PSPvtDN으로 접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10. OSI - 등록부 접근 규약 표준 ;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서 양식 표준 (TTA.IT-X.58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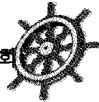
이 표준의 범위는 디렉토리 사용자 처리기(DUA)와 디렉토리 시스템 처리기(DSA)에 대한 적합성 명세서의 사양이다. 본 양식은 DUA 혹은 DSA(둘 중의 하나인) 구현품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.

디렉토리 시스템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설치 운용이 확대될 시스템으로서 OSI 분야 및 전기 통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. 따라서 이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장차 설치될 디렉토리 시스템간의 연동 및 운용에 있어 기본표준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.

11. OSI - 등록부 시스템 규약 표준 ;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서 양식 표준 (TTA.IT-X.582)

이 표준의 범위는 협동 디렉토리 시스템 처리기(DSA)에 대한 적합성 명세의 사양이다.

디렉토리 시스템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설치 운용이 확대될 시스템으로서 OSI분야 및 전기



통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. 따라서 이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장차 설치될 디렉토리 시스템간의 연동 및 운용에 있어 기본 표준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.

12. OSI - 등록부 규약군 ADInn 표준 ; 제3부 : ADI21 - DSA 응답자 역할 표준 (TTA.IS-10615.4)

이 표준은 다른 DSA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결과나 오류를 응답하는 DSA의 DSP규약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.

13. OSI - 등록부 규약군 ADInn 표준 ; 제4부 : ADI22 - DSA 개시자 역할 표준 (TTA.IS-10615.4)

이 표준은 DSA가 요청을 연결하고 결과나 오

류를 수신하는 DSA 개시자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.

14. OSI - 규약군 FDI11 표준 ; 등록부 데이터 정의 - 공통등록부 사용(일반) 표준 (TTA.IS-10616)

이 표준은 여러개의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등록부 정보에 대한 정의로 구성되었다.

15. OSI - 규약군 FDI 3표준 ; 등록부 데이터 정의 - FTAM 등록부 사용 표준 (TTA.IS-11190)

이 표준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렉토리 정보에 추가하여 FTAM에서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정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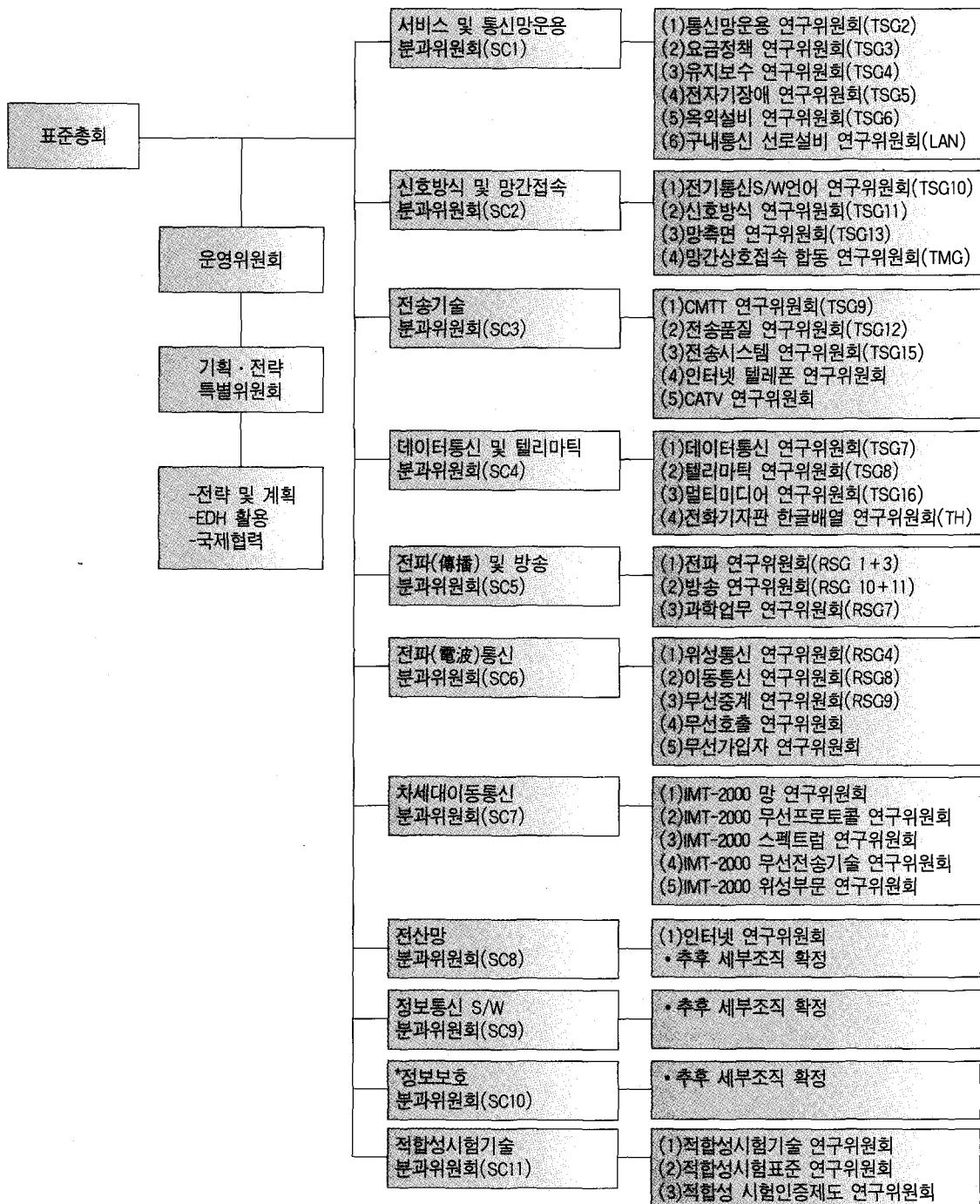
2. 한국정보통신표준(안)

구 분	표 준 (안) 명	과 제 번 호	담당연구위원회
전파통신분야	1. MAP 신호방식(MSC/MSC간) 2. MAP 신호방식(MSC/VLR-HLR-AC) 3. 800MHz대 디지털 이동통신 기지국의 최소 성능 4. 800MHz대 디지털 이동통신 이동국의 최소 성능 5. 디지털 CDMA셀룰라시스템 음성부호화기 6. 800MHz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인터페이스	'94-36 '94-36 '95-87 '95-88 '95-55 '92-118	SC 6
데이터통신 및 텔리마티кс 분야	7. 공중데이터망과 사설데이터망간의 접속 프로토콜	'95-120	SC 4



3.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조직

'97. 7. 1. 현재





4. 정보통신표준화 운영규정

1997. 7. 3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이 운영규정은 정보통신표준화지침 (이하 “표준화지침”이라 한다) 제15조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“한국정보통신표준” (KICS :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, 이하 “국가표준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통신사업자, 제조업체, 연구소, 정부부처등 국가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.
- ② “정보통신단체표준”(TTA표준, 이하 “표준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협회 사업 참가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,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채택하여 협회 사무총장(이하 “협회총장”이라 한다)이 공고하는 표준을 말한다.
- ③ “잠정표준”이라 함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발전추세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하며, 제정 1년 이내에 표준채택여부를 재심의하여야 한다.
- ④ “기술보고서”라 함은 표준으로 제정하기에는 적합치 않으나 표준화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에 충분한 기술문서를 말한다.
- ⑤ “표준화관련 요령”이라 함은 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세부사항을

정한 것으로 협회 또는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제정하는것을 말한다.

- ⑥ “사업참가자”라 함은 협회 사업참가규정 제2조에 의하여 협회사업에 참가하는 자로서 일반참가자와 특별참가자를 포함한다.
- ⑦ “이사사”라 함은 협회 정관 제18조의 이사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.

제2장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

제1절 정보통신표준총회

제 3 조 (정보통신표준총회) 협회는 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표준총회(이하 “표준총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4 조 (표준총회 위원) 표준총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.

- ① 사업참가규정 제4조에 의하여 협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자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)
- ② 사업참가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협회총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변하는 자
- ③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표준총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총장이 위촉한 자

제 5 조 (임무) 표준총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(이하 “제정 등”이라 한다) 및 인증을 수행하는 표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



- ② 국가표준의 견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
- ③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의 의결 또는 승인
- ④ 정보통신표준화 과제의 채택
- ⑤ 표준총회 산하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업무배정
- ⑥ 정보통신표준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등의 제·개정
- ⑦ 기타 정보통신표준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
제 6 조 (의장단) ① 의장단은 의장, 부의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.
② 의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며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③ 의장은 표준총회를 총괄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의장,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⑤ 간사는 협회의 표준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⑥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의 수립,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회의개최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5월 및 11월에 개최한다.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2.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

④ 회의의 소집 및 개최

1.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협회총장이

- 소집한다.
- 2. 협회총장은 제3항의 경우 회의개최 요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3.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표준총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시 개회한다.

제 8 조 (의 결) ① 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총 투표단위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투표단위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기타 사항의 심의에 관한 의결은 출석한 투표단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표준총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의결사항을 우편으로 실시함을 결정할 수 있다. 우편투표시 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총 투표단위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기타사항은 총 투표단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표준총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타의 사항의 심의·의결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표준총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며, 차기 표준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간사는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.

⑥ 기권은 유효 투표단위수에서 제외한다.

제 9 조 (투표단위) 제8조의 투표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: 협회 사업 참가규정 제7조에 따름

②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:
위원회 1표

제 10 조 (우편투표) ① 표결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중 하나로 한다.

1. 찬성
 2. 의견이 있는 찬성
 3. 이유가 있는 반대
 4. 이유가 있는 기권
- ② 반대의 경우는 반대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기권에는 제2항의 반대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반대와 기일내 제출되지 않은 서면의결서를 포함한다.

제 11 조 (의결권 위임)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우편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출석 위원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제 12 조 (의결사항 준수) 협회 사업참가자와 표준총회위원은 의결사항을 준수하고,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의사록) 회의 개최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표준총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① 회의일시 및 장소
- ②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의 수
- ③ 출석위원 성명 (우편표결자 및 위임자 포함)
- ④ 의결사항 (내용, 경과, 결과 등)
- ⑤ 기타 회의진행 사항 등

제2절 운영위원회

제 14 조 (조직) 협회총장은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조정과 표준화 추진에 대한 자문, 표준화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5 조 (운영위원회의 위원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.

- ① 표준총회 의장 및 부의장
-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장
- ③ 이사사의 표준화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중 협회총장이 위촉한 자

제 16 조 (임무)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중장기 및 연도별 표준화 과제계획과 제안 표준화과제에 관한 사항 검토, 조정
- ② 분과위원회 업무의 배정 관련 의견조정
- ③ 표준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
- ④ 표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
- ⑤ 운영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표준총회에 보고하는 일
- ⑥ 표준화관련 협회업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는 일

제 17 조 (의장단) 운영위원회는 의장, 부의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며, 표준총회의 의장, 부의장 및 간사가 그 직무를 겸임한다.

제 18 조 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③ 임시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.

1. 협회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2.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경우
3.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
4.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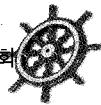
1. 회의는 협회총장이 소집한다.
 2. 협회총장은 제3항의 경우 회의개최 요구 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3.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시 개최한다.
- ⑤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2. 운영위원회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 3. 제2호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4. 우편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한다.

- 제 19 조 (기획·전략특별위원회) ① 표준화 관련 업무의 효율적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·전략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기획·전략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분과위원회 부의장
 2. 표준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과제별 참여 자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총장 이 위촉한 자
 3. 해당분야 전문가중 운영위원회 및 기획·전략특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총장 이 위촉한 자
 4. 사업참가자로부터 추천된 표준화관련 전문가중 협회총장이 위촉한 자

5. 협회직원중에 협회총장이 지명한 자
- ③ 의장단은 의장, 부의장 및 간사를 두며,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협회의 사무국 담당자로 한다.
- ④ 의장,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- ⑤ 기획·전략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운영개선 방안 검토
 2.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전략 작성
 3. 중장기 및 연도별 표준화과제계획(안) 작성
 4. 표준제정절차, 표준작성 및 국내외 표준 연구체계 조사 및 연구
 5. 표준화관련 각종 회의 및 자료의 전자적 처리방안 검토
 6. 국제 표준화 기구 동향분석과 협력
 7.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제반 관련 업무 등
 8. 기타 담당분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시등
- ⑥ 기획·전략 특별위원회 의장은 제4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·전략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3절 분과위원회

- 제 20 조 (조 직) 표준총회의장은 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표준총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
제 21 조 (구 성) ① 분과위원회는 산하 연구위원회 및 협동연구위원회(이하 “연구위원회 등”이라 한다) 의장과 협회 사업참가자로부터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책임자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다.
② 협회총장은 표준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해당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임무)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담당분야의 표준화 전략연구 및 수립
- ② 제안 표준화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선정 표준화과제의 표준안작성지침서 작성
- ③ 국가표준 건의 타당성 검토
- ④ 담당분야의 중장기 및 연도별 표준화과제 계획안 수립
- ⑤ 담당분야의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작성
- ⑥ 전문분야별 연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
- ⑦ 연구위원회등에서 작성한 표준초안 및 연구결과의 검토 및 심의
- ⑧ 기고서 및 ITU 기술회보 등의 검토 및 심의
- ⑨ 담당분야의 신규 전문용어 선정 및 표준화 제안
- ⑩ 기타 담당분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시 등

제 23 조 (의장단의 구성과 임무) ① 의장단은 의장 1인, 부의장 1인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한다.
③ 의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간사는 의장이 협회의 사무국 담당자 또는

위원중에서 지명한다.

- ⑤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의장단은 표준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활동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24 조 (회의개최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2.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
 3.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경우
 4. 협회 표준화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경우
- ④ 회의소집
 1.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 2. 의장은 제3항의 경우 회의개최 요구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3.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회의목적 등을 최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시 개최한다.

제 25 조 (의결)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필요시 의장의 결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우편투표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 조 (의결결과 준수)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



며,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 27 조 (연구위원회 등) ①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표준화 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표준초안 작성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간의 업무중복 또는 경계영역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동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연구위원회 등의 회의는 연간 6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연구위원회 등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수는 3개사, 5인 이상으로 한다.
1.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
 2. 사업참가자 중 해당 연구위원회 등에 참가를 원하는 전문실무자로서 협회 총장이 위촉한 자
 3.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연구위원회 등의 의장이 추천하여 협회 총장이 특별위원으로 위촉한 자
 - ④ 연구위원회 등에는 의장, 부의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며, 의장, 부의장 및 간사는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⑤ 연구위원회 등의 의장, 부의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⑥ 연구위원회의 임무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 업무로 하며, 협동연구위원회의 경우에는 주된 분과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업무로 한다.

제3장 표준의 제정 및 개정절차

- 제 28 조 (표준안의 제안) 표준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 및 단체(이하 “이해관계인”이라 한다)는 협회총장에게 표준의 제정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.

제 29 조 (지적재산권 취급) ① 협회총장은 제안 표준안의 내용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화 과제 채택이전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 협회총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표준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30 조 (제안 표준안의 채택) ① 협회총장은 제28조에 의한 제안 표준안의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뢰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안 표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보고서를 표준총회에 상정한다.

③ 표준총회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 표준안을 표준총회에서 심의하여 표준화 과제로 채택한다.

- ④ 협회총장은 제안된 표준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표준총회에서 표준화과제로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표준초안의 작성) ①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표준총회에서 채택된 표준화과제에 대한 표준초안 작성을 위해 연구위원회 등에 별지 제4호의 표준안작성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위원회 등의 의장은 제1항의 표준안작성지침서 및 이해관계인의 제안 표준안을 기반으로 표준초안을 작성한다.

③ 연구위원회 등의 표준초안 작성은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“정보통신 단체표준 작성요령”에 따른다.

제 32 조 (의견수렴 및 검토) ① 협회총장은 연구위원회 등에서 표준초안이 작성되면 사업



참가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② 의견수렴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
1. 의견수렴의 대상은 협회의 사업참가자를 원칙으로 한다.
 2. 의견수렴은 서면으로 실시하며, 필요시 공청회 또는 전자적 공개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3. 의견수렴시 다음 내용을 의견수렴 대상자들에게 서면질의 용지와 함께 전달해야 한다.
 - 가. 표준의 적용범위와 요약
 - 나. 표준의 목적과 기대효과
 - 다. 이 표준이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 등
 4.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5. 의견수렴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
 6. 의견수렴은 해당 표준안에 대해 의결할 표준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.
- ③ 연구위원회 등은 의견수렴 기간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·조정한다.

제 33 조 (분과위원회안의 채택) 분과위원회 의장은 연구위원회 등에서 작성한 표준초안을 검토·심의한 후, 분과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표준총회에 표준채택을 위해 상정한다.

제 34 조 (표준화 중단) 협회총장은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화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적합치 않을 경우 표준총회 의장에게 표준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35 조 (표준의 채택 등) ① 표준총회는 상

정된 표준안 및 표준제정절차의 타당성여부를 심의·의결하여 표준으로 채택한다.

② 표준총회는 제1항의 표준안이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건의함을 채택하고, 협회총장에게 이를 요청한다.

1. 다수 통신사업자 또는 산업체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 표준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2. 국가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된 표준의 제정등이 필요한 경우
3. 국내 개발 기술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표준으로 제안된 경우

③ 표준총회는 조속히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거나 표준의 기술발전추세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항의 표준안을 잠정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.

제 36 조 (표준의 공고) ① 협회총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표준이 채택되었을 경우 일간신문이나 협회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.

② 협회총장은 표준의 보급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공고된 표준의 열람장소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이의제기) 제35조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 38 조 (이의제기처리) ① 협회총장은 제37조에 의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해당 분과위원회 의장에게 의뢰하고, 분과위원회 의장은 그 결과를 협회총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협회총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 이의



제기된 표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총회에 상정하여 개정 또는 폐지심의를 받도록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된 표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국가표준의 건의) 협회총장은 제35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표준안으로 전의한다.

제 40 조 (국가표준의 재검토) ① 협회총장은 표준화지침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검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의장에게 이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협회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협회총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자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한 경우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1 조 (표준번호부여) 채택된 표준에 대하여 부여하는 표준번호는 별표4와 같다.

제 42 조 (기술보고서 등) ① 기술보고서 등의 작성·개정 및 폐기는 제28조 내지 제35조의 표준의 제정 및 관리절차에 준한다.

② 기술보고서 등의 번호부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.

제4장 국제표준화 활동

제 43 조 (국제표준화 활동) 협회총장은 최신의 국제표준기술 수용 및 국제 또는 지역표준기구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국제표준화동향 조사분석과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44 조 (국제표준화회의 국가대표단 구성 및

참가 절차) 국제표준화회의 국가대표단 구성 및 참가절차는 별표2와 같다.

제 45 조 (기고서 제출 절차) 기고서 제출 절차는 별표3과 같다.

제 46 조 (국제표준화관련 문서의 처리) ① 협회총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배포되는 각종 문서를 관련 위원회에 배포·확산하고, 국제표준화기구의 의견조회 및 기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여 회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5장 보 칙

제 47 조 (표준의 작성요령) 표준총회 의장은 표준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작성의 통일을 기하고자 표준초안 개발단계부터 적용되는 표준의 작성·편집 기준을 표준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48 조 (표준의 특례처리) 표준총회 의장은 제30조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중 신속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과제로 선정하여, 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줄 것을 협회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①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해당분야 산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연구결과를 공개절차를 통하여 의견수렴한 후 표준안으로 제안하는 경우

② 국책연구과제로서 표준화 제안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으로 제안하는 경우

제 49 조 (수당) ① 협회총장은 표준총회 및 산하 각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



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③ 회의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50 조 (표준화 활동비) ① 협회총장은 분과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표준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표준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51 조 (위원의 추천 등) ① 협회 사업참가자가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등의 위원을 추천, 변경 및 탈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1인 3개 이내의 위원회 활동
2. 1개 위원회에 복수위원 추천시 대표위원 선정

② 제1항의 위원추천은 별지 제6호,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협회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협회총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.

제 52 조 (위원의 자격획득 및 상실) ① 제51조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참관자로 등록되며, 참관자로서 연속 2회 참석 시 위원자격을 획득한다.

② 신설되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조건에 관계없이 위원자격을 획득한다.

③ 협회총장은 해당 위원회에 연속 2회이상 불참한 위원 및 참관자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.

④ 협회총장은 위촉된 위원이 이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⑤ 협회총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해임사실을 해당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, 해임된 위원은 향후 2년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199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① 이 운영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TTA표준과 통신표준총회에서 심의·의결된 표준은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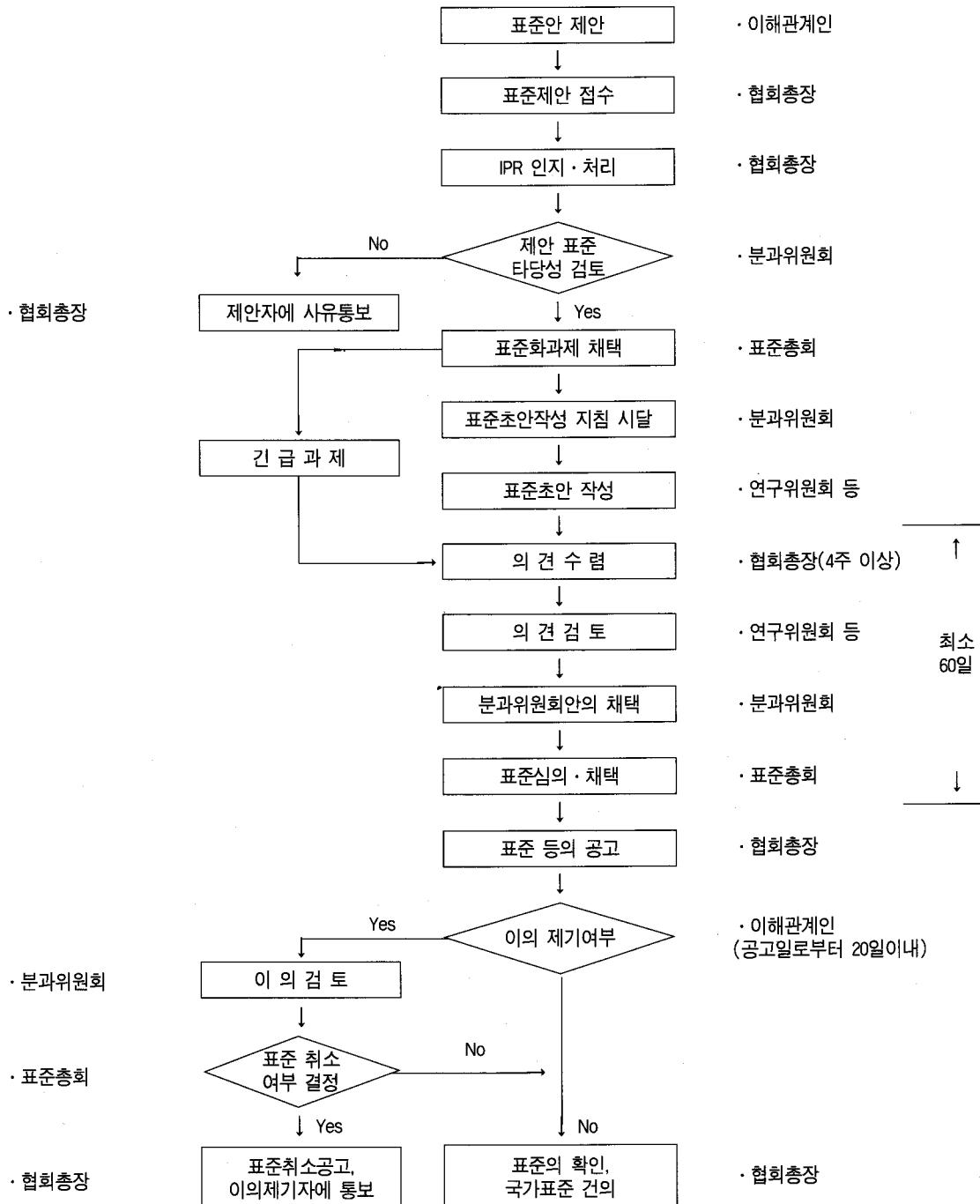
② 이 운영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·운영중인 위원회중 명칭만 변경되는 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협회의 전기통신 표준화 운영요령은 이 운영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

<별표 1>

정보통신단체표준의 제·개정 및 관리절차





〈별표 2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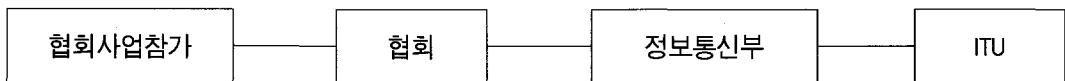
국제표준화회의 국가대표단 구성 및 참가절차

1. 국가대표단 구성 및 참가 절차

가. 다음의 경우는 국가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가한다.

- 1) ITU-T Study Group 회의
- 2) ITU-R Study Group 회의(WP, TG 포함)
- 3) 기타 국제표준화 회의로서 국가대표단 구성이 필요한 회의

나. 국가대표단 구성 절차



* 국가대표단은 ITU회원으로 등록된 주관청, 공인운영기관(ROA), 과학 산업체체(SIO)로서 구성 한다.

- 다. 회의참가신청서는 등록양식(Registration form)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개월 이전까지 협회로 제출한다.
- 라. 국가대표단은 회의참가후 20일 이내에 참가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협회를 경유하여 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. 협회에서는 필요시 자료입수경비를 지원한다.

2. 기타회의(위 1. 가. 이외의 회의) 참가 절차

- 가. 공인운영기관 및 과학 산업체체가 기타회의에 자체적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회의참가 1주일전 까지 참가자명단, 자체참가단대표성명, 참가하는 Study Group 또는 Working Party명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정보통신부가 참가하지 않는 회의의 경우에는, ROA, SIO 순으로 참가자대표가 된다.
- 다. 회의참가자의 대표는 회의참가 후 20일 이내에 참가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3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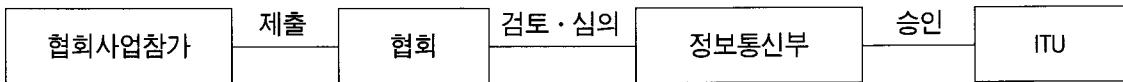
ITU 국내연구활동에 기여한 자로서 ITU 관련회의에 주관청자격으로 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과위원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에 주관청자격을 요청할 수 있다.



〈별표 3〉

기고서 제출절차

1. 기고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하여 ITU사무국에 제출한다.



2. 기고서의 검토 및 심의는 해당연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.
3. 기고서는 ITU-T의 경우는 회의개최 2개월 전까지, ITU-R의 경우는 회의개최 4개월 전까지 ITU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기고서 검토 심의기간(40일)을 감안하여 적기에 협회에 제출한다.

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

제 1 조 (목적) 이 요령은 표준화지침 제4조 제2항 및 운영규정 제29조에 의하여 정보통신 단체표준(이하 “표준”이라 한다)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정의) “지적재산권”이라 함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저작권과 신지적재산권까지를 말하며, 여기에는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.

제 3 조 (지적재산권의 통보) ①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협회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인지통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
 2. 해당 표준의 제목과 검토항목
 3. 해당 지적재산권명 및 관련사항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

제 4 조 (획약서 제출) ① 협회총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통보가 있거나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해 지적재산권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협약서(이하 “획약서”라 한다)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당해 지적재산권자는 제1항의 협약서 제출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회총장은 그 기한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.

- ③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, 제

출하고 이미 제출한 협약서에 중대한 흠결이 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협회총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.

제 5 조 (획약서 검토) ① 협회총장은 제4조에 의하여 협약서가 제출된 경우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를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.

1. 필수 지적재산권인지의 여부
2.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가치 및 잔존기간
3. 지적재산권의 실시조건 및 적정조건과의 비교
4. 기타 지적재산권의 당해 표준화 추진 관련사항

②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표준화과제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표준화 추진) ① 협회총장은 제5조의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안과 당해 협약서를 표준총회에 상정하여 표준화과제 채택심의를 받도록 한다.

1. 지적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
2. 지적재산권을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

② 협회총장은 요청한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5조의 검토결과 협약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안 제안자에게 당해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수정된 표준안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표준화 중단) 협회총장은 제6조 제2



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표준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.

- 제 8 조 (실시조건의 검토등)** ① 분과위원회 의장은 채택된 표준화과제가 제6조 제1항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등에 표준 안작성지침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실시조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협상원칙을 시달하여야 한다.
②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 검토 및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조직을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③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2항의 관련조직을 구성할 경우 해당분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추천을 협회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- 제 9 조 (자문위원회)** ① 협회총장은 표준화 추진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검토와 실시조건 등의 판단에 필요한 자문이나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- 제 10 조 (자문의 처리)** ① 협회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관련조직 및 연구위원회 등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자문 위원회의 검토절차를 거쳐, 연구위원회 등에서 작성된 표준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.
② 협회총장은 제8조의 지적재산권 실시조건 및 협상 등의 검토결과가 적절하지 않거나 자문위원회가 표준화의 추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 11 조 (지적재산권의 명시)** ① 협회총장은 제출된 확약서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

이 표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표준의 지적재산권 관련사실
 2. 지적재산권의 명칭등 관련사항
 3. 세부사항 문의처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의 주요내용이 명시된 표준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.

제 12 조 (표준채택후의 지적재산권취급)

- ① 표준안을 제안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표준의 채택후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이를 자체없이 협회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총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적재산권자에게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확약서는 제5조 제1항을 준용하여 분과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보고되면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협회총장은 제2항의 요청한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당해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 13 조 (확약서 관리)** ① 협회총장은 지적재산권자가 제출한 확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② 표준화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전의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③ 협회총장은 확약서의 내용을 열람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- 제 14 조 (책임의 소재)** 협회총장은 다음 각호



의 1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. 지적재산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성과
당해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
 2. 지적재산권자와 표준 이용자간의 분쟁에
대한 중재
 3. 학약서가 없이 제정된 표준에 지적재산권
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
 4.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
- 제 15 조 (위임사항) 협회총장은 이 요령의 시
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
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효력발생) 이 요령은 1997년 7월 3일
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규정) 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제
출한 학약서는 이 요령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
로 본다.

제 3 조 (준용규정) 이 요령에서 정함이 없는
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지침 및 운
영규정을 준용한다. 



[별지 제1호 서식]

**표준 관련 지적재산권
인지통보서**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귀하

제출년월일 : 년 월 일
 제출자 :
 법인의 명칭 :
 대표자 : ④
 주소 :
 전화번호 :

정보통신단체표준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(제1차 정보신표준총회, '97. 7. 3)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인지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

① 관련표준의 제목(검토항목)			
②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명칭			
③ 출원번호 및 일자 공개번호			
④ 등록번호 및 일자		공개번호	
⑤ 지적재산권 출원인 성명 또는 법인명칭			
⑥ 지적재산권 권리자 성명 및 주소 /전화번호			
⑦ 출원국명			
⑧ 첨부 자료 등			
⑨ 비고			

⑩ 해당 지적재산권의 최신내용을 기재한 특허공보 또는 관련자료 첨부

⑪ 기타 표준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

* 주 : 해당 지적재산권이 복수인 경우는 본 양식으로 각각에 대해 작성



[별지 제2호 서식]

**표준 관련 지적재산권
취급 확약서**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귀하

제출년월일 :	년 월 일
제출자 :	
법인의 명칭 :	
대표자 :	㊞
주소 :	
전화번호 :	

정보통신단체표준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(제1차 정보통신표준총회, '97. 7. 3)에 따라 본인의 지적재산권 실시를 다음의 조건으로 허용합니다.

1. 관련 표준의 제목 또는 검토 항목
2. 해당 지적재산권 : 별지
3. 실시를 허용함에 있어서의 조건
(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)



[별지]

①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명칭		
② 출원번호 및 일자		
③ 등록번호 및 일자	공개번호	
④ 지적재산권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		
⑤ 지적재산권 권리자 성명 및 주소 /전화번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락처		
⑥ 출원국명		
⑦ 첨부 자료 등 (1)명세서 (2)필요한 도면		
⑧ 출원중인 권리에 포함되는 표준의 내용 명시		
⑨ 비고		

- ④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
- ⑤⑦ 공개전의 것에 대해서는 기입이 필요치 않음
- ⑦ 해당 지적재산권의 최신내용을 기재한 특허공보 또는 관련자료 첨부
- ⑨ 기타 표준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

* 주 : 해당 지적재산권이 복수인 경우는 본 양식으로 각각에 대해 작성